■ [별지 제1호서식]

일련번호 : 제2022 - 9 호

검 사 명 령 서

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	대상 제품 : 바질(잎)	
	대상 국가 : 태국	
	대상 해외제조업소	
영업자	영업의 종류	
	영업소 명칭	
	소재지	
사유 : 수입식품등을 검사한 결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식품등에 해당		
기간 : 2022. 6. 25. ~ 2023. 6. 24.		
검사항목 : 메톡시페노자이드, 비펜트린, 아세타미프리드, 카바릴, 카벤다짐, 카보퓨란, 톨펜피라드, 프로피코나졸		
시험법 :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의 시험법을 따름		
기타 : 「식품·의약품 분야 시험·검사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식품전문 시험·검사기관 또는 같은법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·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매 수입 시 수입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 * 검체채취는 시험·검사기관 직원이 입회하여 실시		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검사를 명령합니다.

2022 년 6 월 20 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인

유의사항

1. 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려는 자가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의 시험·검사성적서(검사로써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없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식품등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)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신고 할 수 없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]